

민원 인쇄 ✕
인쇄자: 김명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8-0867777
신청일	2026-08-21 19:58:04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mkim1795@daum.net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서로의 범죄 은폐하는 "부당거래"로 국민 등 처벌는 은평 경찰서와 은평구청을 고발한다
내용	고소인: 김명호 피고소 기관: 은평경찰서, 은평구청 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형법] 제30조(공동 정범), 제32조(중범) 국민을 위하여 서로 감시 견제하기는커녕 서로 간의 범죄 묵인 해주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 2기관은 은평구 뉴타운 10단지-1의 관리비 도둑질 사건을(서부지검 2026형제4934호, 은평경찰서 2026-001051, 이하 "관리비 도둑질") 은폐/축소하는데 작당하였기에, 알선수재 관리비 도둑질의 공동정범 및 중범으로 고소한다.

공동정범 입증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정범 입증에 대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요지

(1)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2) 그 의사결합에 대한 입증은, 정황 사실들을 치밀한 관찰,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인 판단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

따라서, 위 기관의 의사결합, 즉 공동정범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황 사실들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2. 정황 사실들과 그 연관성

(1) 서로 간의 범죄적 약점 쥐고 있는 집행 기관

가. 은평경찰서는 [주차장법] 및 [불법건축물] 위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임에도 (3.24일 고소, 서부지검 2026형제7286호)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기관인 은평구청은 지금 현재까지 은폐해 주고 있고

나. 은평구는 관리비 도둑질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옥 구청 주무관은 관리비 도둑질의 공범으로(3.17일 고소) 은평경찰서에 고소된 상태.

(2) 관리비 도둑질의, “수의계약서 공개 관련 법령 위반” 조사(이하, “핵심조사”)를 일치단결하여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2기관

가. 2년 6개월여, 고소인이 수의계약서 관련 게시물을 올려놓은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eunpyeong10>)의 게시물 확인은 핵심조사로서, 관리비 도둑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100% 유죄 확정하는 것이고 그건 곧 은평구청을 범죄기관으로 낙인 찍는 것이니 은평구청이 은평경찰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가만히 있겠는가?

나. 그러니 은평경찰서는 핵심조사를 5개월여 미루며 은평구청의 감사를 기다려온 것이고 감사 발표 인용하여 위법 개판 수사 결과를 내겠다는 뻔한 수작인 거다.

다. 물론 당연히 4일간의 은평구청 감사(8.18-21일)에서도 핵심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일절 하지 않았다(*카페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18일(오후 3-4시) 감사현장(입주자 대표회의실)에 찾아가 강력하게 핵심조사를 해야 한다며 카페 주소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3. 결론: 2기관이 합심하여 핵심조사 거부함으로써, “서로 간의 범죄 은폐 알선”을 주고 받은 행위로 알선수재 공동정범인 것. 그리고 관리비 도둑질의 중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는 종년놈들의 기관들이 서로의 범죄 비호하는 “부당거래”로 국민들 등 처먹고 있는 거지.

* 기록으로 남길 뿐, 고소인은 기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법대로 해결될 거라고는. 왜냐하면, 대검찰청 “공무원 부패 장려 부장” 주민철을 비롯한 검사년놈들이 썩어 빠지고 죄다 돌대가리들이거든.

대다수가 아파트에 사는 그 검사년놈들도 관리비 사기 당하는 주제에 “묻지마 불기소

	처분"하며 "지 발등 내려 찍는" 돌대가리들이란 말이다. 자세한 건 ⇒ 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
첨부 파일	
피민원인명	은평 경찰서, 은평 구청
피민원인 근무처명	
피민원인 주소	
피민원인 연락처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8-0942971
접수일	2026-08-24 10:13:21
담당자(연락처)	이장근 (02-3270-4520)
처리에정일	2027-01-0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통지일	2026-09-17 17:54:10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님.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 이장근 수사관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1AA-2608-086777 등】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아파트 관리 비리 은폐 관련 배임 등의 고소 취지】 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에 의하여 서울서부지검 고소사건으로 접수하기 위해 사건과 고소고발 접수 담당자

(02-3270-4251)에게 귀하의 민원 자료를 인계하여 드렸습니다.

- 참고로, 귀하의 고소 사건을 접수 처리 후 사건번호와 주임검사가 정하여지면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에서 답변 처리를 하고자 배당되기를 기다렸으나, 서부지검 사건과 고소고발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있어 배당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불편하신 점 다소 해소하여 드리고자 이렇게나마 답변을 드리며, 차후 배당이 끝나면 2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 이장근 수사관 (☎ 02-3270-4250)

(우) 042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대검찰청에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본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한마디 더

검찰이 쓰레기통인 건 틀림없군

쓰레기 검사년놈들은 인사 이동 기간에는 국민세금의 월급 안 받냐?
받아 처먹고 있잖아

그러면, 쓰레기 "재배치"는 재배치고...
재배치 받기 전까지는 받아 처먹고 있는 월급 값은 해야지.
검사 시발-년놈들!
욕이 저절로 나온다